

# 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】

의안번호

387

2024. 3. 21.

복지환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및 제출자 : 2024. 3. 6. / 박윤옥 의원 등 13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. 3. 6.  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3. 21.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,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  
○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 규정(안 제4조)  
○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  
○ 실태조사, 교육·홍보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 ~ 제8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서용관)

- 본 안건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-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야생조류의 사고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의 멸종을 저감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아울러 상위 관계법령인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규정에서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·추락 등의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설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등 검토 결과 입법체계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

### 4. 질의·답변요지 :

- 회의록 참고

### 5. 토론요지 : 없 음

### 6. 심사결과 : 『원안가결』

### 7. 소수의견 요지 : 없 음